#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827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장종태·박정현·이건태

박용갑・조승래・박해철

조계원 • 문금주 • 최민희

허성무ㆍ이재강ㆍ김 윤

채현일 • 박희승 • 김문수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아닌 자의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의약품 유통질서 교란 행위 등의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감독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신고인 본인이 직접 감독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법 위반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실명 신고의 부담감으로 인해 이에 소극적임.

또한, 현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신고 포상금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없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이 불가능하고, 포상금의 상한도 벌금액 또는 과태료액의 100분의 20 수준에 불과하여 그 액수가 크지 않은 상황임.

이에 비실명 대리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하여금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며, 포상금 지급 시 법을 위반하여 취 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신고를 활성화하고 의약품 유통시장의 질 서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3 신설 등).

###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약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3(비실명 대리신고)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로 하여금 그 신고를 대리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실명 대리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감독기관"으로 본다.

제90조 중 "제23조"를 "감독기관의 장은 제23조"로, "고발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고발한 자에게"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5억원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 또는 고발 당한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 &lt;신 설&gt;</u>	제89조의3(비실명 대리신고) ①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관에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신의 인
	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
	호사로 하여금 그 신고를 대리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비실명 대리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
	신고자 보호법」 제8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감독기관"으로 본다.
제90조(포상금) <u>제23조</u> , 제24조제	제90조(포상금) <u>감독기관의 장은</u>
1항·제2항, 제24조의2, 제26조	제23조
제1항, 제27조제1항·제3항, 제	
44조제1항, 제47조의4 및 제50	
조제1항(제44조의6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감독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u>고발</u>	<u>고발한 자</u>
한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	<u>에게</u>
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u>이 경우 포상금은 5억</u>

원 이하의 범위에서 신고 또는 고발 당한 자가 이 법을 위반 하여 취득한 부당이득의 규모, 신고에 따른 공익의 증진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